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9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고영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
제3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11월 29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영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고령화와 저출산,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국내 혈액 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유공패(장)을 받은 헌혈구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내용 규정 신설(안 제6조제4항 신설)

○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표창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헌혈자 수와 헌혈량이 지속적으로 감세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및 장기기증 등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패을 받은 사람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
- 안 제6조의2에서는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참고로 대한적십자의 헌혈유공패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감사와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수여되는 것으로 헌혈 횟수에 따라 은장(30회), 금장(50회), 명예장(100회), 명예대장(200회), 최고명예대장(300회)이 있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음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헌혈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